불가리아 헌법재판소

국 가 개 요
1. 국명 : 불가리아 공화국(Republic of Bulgaria) 2. 수도 : 소피아(Sofia, 120만명) 3. 인구·면적 : 719만명(2015.7.), 111,000㎢(한반도의 약 1/2) 4. 공용어 : 불가리아어 5. 1인당 GDP : 7,648불(2016년) 6. 독립일 : 1908.9.22.(오스만제국-옛 터키제국-으로부터) 7. 정부형태 및 의회 : 의회민주제(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혼합), 단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○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Bulgaria

2. 연혁

○ 1989. 11. 공산정권 붕괴, 민주화 시작

○ 1991. 7. 12. 민주주의 신헌법 제정

○ 1991. 8. 16. 헌법재판소법 제정

○ 1991. 10. 3. 헌법재판소 설립

3. 구성

○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(Chairman)을 포함한 12인의 재판관(Justice)으로 구성

○ 재판관은 국회에서 1/3을 선출하고, 대통령이 1/3을 임명하며, 최고파기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재판관합동총회에서 1/3을 선출

○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, 중임 불가

○ 재판관은 매 3년마다 4인씩 교체

○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,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

○ 재판관 자격 :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고,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지닌 법률가

4. 권한

① 구속력 있는 헌법의 해석

②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및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 심판

③ 국회, 대통령, 각료회의 간, 지방자치정부기관과 국가행정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

④ 정부가 체결한 국제조약의 비준 전 합헌성 여부 심판과 국내 법률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불가리아 정부가 당사자인 국제조약에의 합치성 여부 심판

⑤ 정당과 정치단체의 위헌성 여부 심판

⑥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의 위법성 여부 심판

⑦ 국회의원 선거의 위법성 여부 심판

⑧ 국회에 의한 대통령 또는 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

⑨ 헌법적 법률관계의 사실 확정 등

- 대통령과 부통령의 사임과 영구적 직무수행불능 여부
- 국회의원의 자격상실과 부적격성 여부
- 헌법재판관의 사임, 1년 이상의 직무수행불능 및 헌법 제147조 제5항의 겸직금지행위 수행 여부
- 헌법재판관의 면책특권 박탈

5. 심리 및 결정

○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누어 진행하며, 비공개가 원칙

○ 헌법재판소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해당사자의 불출석이 원칙이나, 대통령·부통령의 탄핵심판과 국회의원의 형사사건, 헌법재판관의 면책특권 박탈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당사자 출석

○ 재판관 2/3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를 개시

○ 전체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

○ 탄핵심판과 재판관의 면책특권박탈 및 직무수행불능확인은 비공개 투표로 결정

○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은 서면으로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, 비밀투표에 의한 결정에는 소수의견 표시 불가

○ 다수의견의 재판관은 각자 서면으로 결정이유를 표시할 수 있음

○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이유는 15일 이내에 관보로 게재하여야 하고 게재 3일 후에 발효됨. 대통령, 부통령, 국회의원 선거, 헌법재판관 지위 관련 판결은 그 당일에 효력을 가짐

6. 기타사항

○ 헌법재판청구권은 국회 재적의원 1/5이상, 대통령, 각료회의, 최고파기법원, 최고행정법원, 검찰총장에게 있으며, 지방의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

○ 헌법소원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

- 일반 국민이나 법인은 소송이나 진정, 청원만이 가능하고 헌법재판 청구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헌법재판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

7. 연락처

○ 주　　소 : 1 Dondukov Blvd, 1594 Sofia
Bulgaria

○ 전화번호 : +359 2 987 5008

○ 팩스번호 : +359 2 987 1986

○ 홈페이지 : http://constcourt.bg/

※ 출처 :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웹사이트
불가리아 헌법
불가리아 헌법재판소법
(2016. 10. 작성)